



가족회사 운영 규정

제정일	2019. 7. 1
개정일	2022. 3. 1
개정차수	1차
담당부서	산학협력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가족회사 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회사”라 함은 본 대학교와 기업체간 기술경영지도, 산학공동연구, 교원 연수, 학생 취업, 학생 현장실습 및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하는 기업으로 본 대학교에 가족회사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고 협약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체”라 함은 본 대학교와 산학협력이 필요한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전담교수”라 함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서 개별 가족회사와 관련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 3조 (담당부서) 가족회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서울대학교 산학취업처(이하 “산학취업처”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족회사의 가입 접수, 승인, 탈퇴 및 정보관리 등의 행정업무
2. 가족회사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가족회사 상담 및 지원
4. 가족회사 전문분과별 운영 및 지원
5. 교원 업적평가 자료 제공
6. 기타 가족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4조 (가입 및 승인) ① 가족회사의 신규가입(협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학과 및 기업체는 가족회사 회의개최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산학취업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취업처는 가족회사회의 개최계획서를 접수한 후 산학취업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총장은 대학의 발전목표 및 대학 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한다. 다만, 상호간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조 (협약) ① 본 대학교는 가입이 승인된 기업과 가족회사협정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내용은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②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해당 전담교수를 통해 기업체로 발송하며, 전담교수는 가족회사 협약체결 후 협약서 1부(본 대학교 보관용)를 산학취업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약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협약이 결렬된 것으로 본다.

제 6조 (전담교수의 역할) 가족회사 전담교수는 해당 기업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에게는 현장실습, 인턴십(학기제 현장실습), 취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에는 기술·경영지도, 산학공동연구 등의 참여로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활동의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제 7조 (가족회사에 대한 혜택) 본 대학교는 가족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연계 연구과제, 기술지도 및 자문, 산업체 재직자교육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며, 산학협력 기금을 기탁한 가족회사에게는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2. 본교 지식재산권 자료 제공 및 기술이전 등의 상담 지원
3. 기술교류회 및 포럼, 산학협력 협의체 등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성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정보 획득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가족회사 의견 제안
4. 대학 보유 시설 및 공동장비 활용 지원
5. 정부 및 지자체 주관의 연구개발과제 제안 컨설팅 및 산학 공동기술개발 참여를 위한 해당 분야 전문가 매칭 지원

제 8조 (제반경비) 가족회사 협약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산학취업처와 기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9조 (협약의 해지 등) ① 가족회사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또는 휴·폐업으로 확인될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지 처리한다.

② 가족회사가 명예를 실추하여 더 이상 본 대학교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산학협력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보호) 산학취업처는 가족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취업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족회사 회의개최 계획서

월		학부(과)			학부(과)장	(인)	
순번	협약체결	일시	업체명	담당교수	참여교수	사용예정금액	비고
1	신규/ 기체결/ 미체결					원	
2	신규/ 기체결/ 미체결					원	
3	신규/ 기체결/ 미체결					원	
4	신규/ 기체결/ 미체결					원	
5	신규/ 기체결/ 미체결					원	
6	신규/ 기체결/ 미체결					원	
7	신규/ 기체결/ 미체결					원	
8	신규/ 기체결/ 미체결					원	
9	신규/ 기체결/ 미체결					원	
10	신규/ 기체결/ 미체결					원	
11	신규/ 기체결/ 미체결					원	
12	신규/ 기체결/ 미체결					원	
13	신규/ 기체결/ 미체결					원	
14	신규/ 기체결/ 미체결					원	
15	신규/ 기체결/ 미체결					원	

0000- 000

가족회사 협약서

(산학연 연계교육 협약서)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과 기술교육체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인재채용, 교육협력, 기술개발 및 제반 업무의 정보교류를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동서울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기업명(이하 “산업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협정한다. 단,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00000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학과장에게 가족회사회의의 위원직을 위임한다.

제1조 “대학”과 “학과”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전문 기술인력의 공동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산업체”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수요 맞춤형 교육에 적극 협조한다.

제2조 “산업체”는 “대학”과 “학과”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으로 양성된 우수한 인재를 교류 및 채용에 협조를 한다.

제3조 “대학”과 “학과”는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설인프라, 기술개발, 재직자교육 등 공유·협업을 통하여 상호 발전에 적극 협력한다.

부 칙

1. 본 협정은 “대학”과 “학과” 및 “산업체”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 본 협정의 시행기간은 6년으로 하고, “대학”과 “산업체”의 이의가 없는 한 유효하다.
3. 본 협정은 시행기간 만료일까지 “대학” 및 “산업체”의 이의가 없는 한 재협정으로 인정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기업 주소

동서울대학교 총장

(주) 기업명

00000학과